

	타 대학 학점교류 운영지침	문서번호	3-4-23		
		제정일	2020. 12. 31.		
		개정일			
		페이지	1/1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대학 간 협력교육 교과목의 신청 및 학점 인정 등 학점교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대학 간 협력교육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의 협력교육 교과목에 적용한다.

제3조(수강신청) ① 학기당 1인 1교과목만 신청할 수 있다.

② 수강신청 절차는 별도 공지에 따라 진행한다.

제4조(운영) 매 학기 협약대학 간 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를 정하여 시행한다.

1. 개설교과목의 종류: 교과목 수, 학점 등
2. 수업 운영방식
3. 대학별 배정 인원

제5조(성적) 타 대학 학점교류 교과목의 성적은 P/NP로 평가한다.

제6조(보칙)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 및 대학 간 협의에 의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